**2014년도 - 판결 제238번**

이탈리아 공화국

이탈리아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

구성:

헌법재판소장 쥬세페 테사우로; 재판관: 사비노 카쎄제, 파올로 마리아 나폴리타노, 쥬세페 프리고, 알레산드로 크리스쿠올로, 파올로 그로씨, 죠르지오 라탄지, 알도 카로시, 마르타 카르타비아, 세르지오 마타렐라, 마리오 로자리오 모렐리, 지안카를로 코라지오, 쥴리아노 아마토

판결

헌법재판소는 피렌체 재판소가 2014. 1. 21.의 제84호, 제85호 그리고 제113호 명령을 통해 판결을 내렸으며 2014. 공화국 관보 제23호과 제29호 특별시리즈 I 에 출간된 1957. 8. 17.의 제848호 법률 제1조와 2013. 1. 14.(국내 법률 명령의 개정을 위한 규정들과 더불어 2004. 12. 2. 뉴욕에서 서명된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유엔협약에 대한 이탈리아 공화국의 승인)의 제5호 법률 제1조(정확히는 제3조)의 합헌성과 관련된 사건들에서,

S.F., A.M.과 그 외의 출석, 그리고 B.D.를 비롯한 각료회의 의장의 개입과 관련해서;

2014. 9. 23. 공청회에서 쥬세페 테사우로 재판관의 논평을 들은 바;

S.F., A.M. 외, 그리고 B.D.의 법률대리인 요아킴 라우와 각료회의 의장을 대변하는 검사 다이애나 라쿠치의 주장을 심의한 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사실관계의 확정*

1. 2014. 1. 21.에 채택된 세 개의 동일한 명령(명령 제84, 85, 113호/2014)에 의하여 피렌체 재판소는 다음에 대한 합헌성에 관한 질문을 제기했다.

1) “헌법 제10조 1절에 의해 국제관습이 편입되어 우리의 법률 체제에 형성된 규범” — 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가 2012. 2. 3.에 내린 판결에서 보여지듯이 본 규범은 최소한 일부라도 법원이 위치해 있는 국가 (이하 “포럼국가”)에서 제3제국(Third Reich)이 주권적 행위로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민사법원의] 관할권을 부인하는 범위내에서;

2) 1957. 8. 17. 제848호 법률 제1조(1945. 6. 16.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유엔헌장의 집행)의 합헌성 — 본 조항은 유엔헌장 제94조의 편입을 통해 국내 재판관이 ICJ의 결정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그 결정은 이탈리아 법원들이 최소한 일부의 이탈리아 영토에서 제3제국이 주권적 행위로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심리에서 그들의 관할권을 부인할 의무를 확립하는 범위내에서;

3) 2013. 1. 14.(국내 법률 체제의 개정을 위한 규정들과 더불어 2004. 12. 2. 뉴욕에서 서명된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유엔협약의 이탈리아 공화국의 승인)의 제5호 법률 제1조(정확히는 제3조)의 합헌성 — 본 조항은 헌법 제2조와 제24조와 관련해서 제3제국이 이탈리아 영토에서 주권적 행위로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심리에서 그들의 관할권을 부인할 이탈리아 법원의 의무를 확립한다고 할 때라도 국내재판관이 ICJ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규범들은 헌법 제2조와 제24조와 관련하여 쟁점이 있다. 이 규범들은 헌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법보호의 완전한 보장의 원칙과 충돌이 된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 사건과 이탈리아(사법 보호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영토에서 다른 나라가 그 주권(jure imperii) 행사 중 저지른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들이 겪은 방대한 인권 침해로 야기된 손해에 따른 배상의 사법 검토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법 보호의 완전한 보장의 원칙은 이탈리아 헌정 질서의 최고의 원칙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은 (헌법 제10조 1절에 따라)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규범, 그리고 헌법 제11조가 추구하는 목표들을 증진시키는 국제기구들을 수립하거나 그러한 기구들로부터 파생된 조약들에 포함되어 있는 규범의 [국내 법률체계로의] 도입에 제한이 된다.

1.1 하급심 재판관은 다음의 사건들을 심의했다고 표명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F.S.씨가 제기한 첫번째 소송. F.S.는 이탈리아 영토에서 독일군에게 납치된 뒤 1944. 6. 8.에 마우타우젠으로 추방되었다.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뒤 1945. 6. 25.에서야 풀려났다;

L.C.씨의 합법적 상속인이 독일로부터 L.C.씨가 제2차 세계대전 중 겪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제기한 두번째 소송. L.C.는 1943. 9. 8. 이탈리아 영토에서 독일군에게 납치된 후 독일로 추방되어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다. 그는 독일 칼라(튀링겐)의 강제수용소 중 한 곳에서 사망했으며, 국제적십자사에 따르면 노예생활을 했던 6천 명의 제소자들과 함께 공동묘지에 묻혔다고 한다;

D.B.씨가 독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중 겪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제기한 세번째 소송. D.B.는 1943. 9. 9.에 이탈리아 영토에서 독일군에게 납치되었다. 그는 (그가 입원해 있었던) 베로나에서 생포되어 추방된 뒤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 그는 부헨발트의 부속 수용소인 자이츠 강제수용소에 격리되었다가 하트만스돌프 슈탐라거 IVF 강제 수용소로, 그리고 또 다시 그란슈츠로 이송되었다. D.B.는 전쟁 끝 무렵에 연합군에 의해 그란슈츠에서 풀려났다.

하급심 재판관은 독일연방공화국이 이 소송들에 출석을 신청했고 이탈리아 사법당국에게 관할권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상기한다. 독일은 재판관이 2012. 2. 3. ICJ의 판결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사건의 본안 심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재판관은 재판소가 그 관할권을 부정하도록 요구하는 규범들의 합헌성에 대해 앞에서 언급한 질문을 제기했다.

1.2.-피렌체 재판소가 언급하기로 이 사건들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규범들을 따르는) [이탈리아] 법률 체제가 국제범죄가 저질러진 국가의 법원들로 하여금 주권의 행사였다 하더라도 이탈리아 영토에서 외국이 저지른, 기본권을 침해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사건들에서 손해배상소송의 심의를 거부하도록 요구했는지 여부이다.

하급심 재판관은 청구의 주제를 구성하는, 궁극적으로는 국제범죄에 이르는 행동의 본질과 그 행동들이 근본적 권리들을 침해할 잠재력은 논란이 없다고 지적한다. 재판관은 또한 ICJ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대법원이 국제법상 인정된 외국의 민사관할권으로부터의 면책특권의 절대적이지 않은 특성을 확인했다는 점을 상기한다. 대법원은 국가가 그 주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국제범죄로 여겨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면제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판결 제5044/2004호과 제14202/2008호).

그러나, 2012. 2. 3. ICJ의 판결이후 대법원은 법리를 변경했다. 그 판결에서 ICJ는 외국이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침해로 비난을 받고 있더라도 “무력분쟁 중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한 국가의 군대와 다른 국가 기구들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에서 국제관습법은 계속해서 그 국가가 면제권을 가지도록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원은 ICJ의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했고, 이탈리아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왜냐하면 “판결 제5044/1004호에서 대법원이 내세운 법리는 고립된 채 남아 있고, 국제사회의 최고의 발현인 ICJ에서 지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원칙은…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판결 제32139/2012호과 제4284/2-13호).

2013. 1. 14. 의회는 이러한 지향과 부합하게 제5호 법률(국내 법률 체제의 개정을 위한 규정들과 더불어 2004년 12월 2일 뉴욕에서 서명된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에 대한 이탈리아 공화국의 승인)을 통과시켰고 제3제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와 진행중인 소송들에 대한 이탈리아 법원의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배제(제3조)했다.

피렌체 재판소가 지적하기로 ICJ는 근본적인 인권과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혹이 있는 국가의 주권 사이에 개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ICJ는 실질적인 강행법규 규범들과 형식적이거나 절차적 성격의 규범들(면제권과 같은)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는 이들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급심 재판관은 ICJ에게 이 문제에 대한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법원이 강행법규의 명령적이고 제약할 수 없는 성격을 해석할 수 없는 한편, 이탈리아 법원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을 해치면서까지 국가들에게 면제권을 무분별하게 부여하는 것이 이탈리아 헌법과 그 보충적인 법원들(초국가적 법원 포함)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권능 또한 부정될 수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이탈리아 법원들은 [이탈리아 법률 체제의] 외부의 법률 체제의 수용성(헌법 제10조, 11조, 그리고 117조에 명시된 대로)이 어느 수준까지 제한되는지를, 현 사건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이 제기한 예비적 쟁점에 끼칠 영향과 관련하여 평가할 권한이 있다.

하급심 재판관에 따르면 헌법과 기본적 권리에 대한 EU헌장의 발효 전에 존재하던 국제관습의 영향으로 국가의 면제권(특히 EU국가들)이 불가침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침해된 기본권에 대한 사법적 보호의 무차별적인 부정을 아직도 허용하고 있다.

ICJ도 이러한 상황이 침해된 권리들에 대한 사법 보호의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위반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J는 실체법적 강행법규(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만연한 관행들에 의해 침해된 근본적 인권) 위반이 절차적인 성격의 국가면제에 대한 국제법 규범과 충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를 고려하여 피렌체 재판소는, 국내법에 관해서는, 국가의 주권 평등의 원칙(특히 면제권과 관련해서는 그 필연적 결과)이 비록 주권의 행사였다 하더라도 국제범죄를 저지른 한 국가-포럼국가와는 다른-를 상대로 사법적 보호가 적용된 경우에 기본적 권리의 사법 보호를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하급심 재판관이 인정한 것은 본 사안에 아무런 재량도 남기지 않는 ICJ의 판결을 따라 국내 법원들이 점령된 이탈리아 영토에서 제3제국이 저지른 범죄 행위들이 국제법상 주권적 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지를 확립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은 국제 면제의 절대적인 특성이 본 사건에서 독일 법률 체제에 의해서도 거부된 사법심사와 구제의 가능성을 피해자에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피렌체 재판소는 초기 판결(제48/1979호) 이래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1절에 의해 이탈리아 법률 체제에 편입된)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규범과 이탈리아 법률 체제의 기본 원칙들이 상충할 경우 후자의 우세를 지지해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

그 후의 결정(판결 제73/2011호)에서 헌법재판소는—하급심 재판관이 기억하기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규범들과 국제조약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이탈리아 법률 체제의 경향은 그 정체성을 보존할 필요에 따라 무엇보다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치들에 의해 제한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므로, 하급심 재판관은 헌정 질서와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의 기본 원칙들이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목표를 더 진척시키기 위해 국제기구들을 설립한 조약과 그러한 기구들로부터 파생한 규범들과 더불어 (헌법 제10조 1절에 따라 이탈리아 법규 명령이 준수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규범들의 도입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24조의 원칙은 이탈리아 헌정 질서의 최고 원칙 중 하나이고 “민주주의 원칙과 누구나에게 언제든 어느 분쟁에서든 법관과 판결을 보장해야 할 의무”(판결 제18/1982호)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급심 재판관은 [면제권의] 관습 규범의 합헌성에 질문을 던진다. 하급심 재판관에 따르면 본 사안의 국제관습법의 규범(ICJ가 정의한 대로)은 포럼국가에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의 결과로 근본적 권리들이 침해되었을 경우 다른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법적 보호의 절대적인 보장이라는 최고의 원칙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요컨대, 하급심 재판관에 따르면 이탈리아 법원은 ICJ의 판결을 따를 수 없으며 그러므로 그들의 관할권을 부인한다. 이탈리아 법원은 관련 국가들의 정치기구들간의 역학관계에 개인들의 보호를 맡길 수 없다. 이 기구들은 수십 년간 해결책을 찾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제3제국이 저지른 비뚤어진 행동들에 대해 사법 심사와 배상이 부인된다면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희생될 것이다.

나아가 하급심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제311/2009호 판결로 인해 합헌성의 문제를 제기해야 했음을 분명히 한다. 그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국제법이 충돌할 때에는 “국제 규범의 적용은 작동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제 규범은 헌법 제117조 1절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따라서 “외부 규범의 합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는 그 적응(adaptation)의 법칙의 위헌성을 야기한다(판결 제348호과 349/2007호)”고 했다.

위에 비추어 피렌체 재판소는 합헌성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회부한다. 재판소는 전쟁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불법행위가 최소한 부분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끼쳤던 국가의 관할권을 부정하는 (헌법 제10조 1절에 의해 이탈리아 헌법 발효 전에 생긴 국제 규범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국내 규범의 합헌성에 대한 질문이 명백하게 근거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급심 재판관은 나아가 “유엔의 각 회원국은 그 회원이 당사자인 모든 사건에서 ICJ의 결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한 유엔헌장 제94조는 헌법 규범(예, 헌법 제11조)에 의해 비준—본질적으로 헌법 하위의—을 통해 국내 법률 체제에 편입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항은 국내 법률 체제에서 헌법과 양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하급심 재판관은 그 합헌성의 문제는 제848/1957호 법률이 유엔헌장(특히 제94조)을 수용하고 모든 국가 기관들로 하여금 2012. 2. 3.의 판결을 포함한 ICJ의 모든 결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같은 이유로 하급심 재판관은 이탈리아 영토에서 제3제국이 주권적 행위로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이탈리아 법원의 관할권을 부인한 ICJ의 판결에 따를 국내법관의 의무를 규제하는 제5/2013호 법률 제3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피렌체 재판소가 명시한 것은 문제가 되는 각 조항의 합헌성은 주된 판결에 독립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규범들 중 그 어떤 것이라도 개별적으로도 관할권의 행사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주검찰청(Avvocatura)이 대리한 각료회의 의장은 이 사건들에 개입했다. 의장은 합헌성의 문제가 인정할 수 없거나 근거없다고 선언될 것을 요구했다.

첫째로, 주검찰청은 제기된 문제가 헌법 채택 이전에 형성되었던 면제권의 관습 규범에 대한 헌법적인 검토를 수반하기 때문에 본 사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검찰청에 따르면 이 규범은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법리는 국제 관습 규범의 헌법적인 검토는 오직 헌법이 발효된 후에 형성된 규범들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이 주장의 뒷받침을 위해 판결 제48/1979, 15/1996, 그리고 262/2009호가 상기되었다).

각료회의 의장은 나아가 관할권 문제는 논리적으로 본안 심사 전에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실체법적 강행법규 규범을 위반한 행위들로 초래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근간으로 한 영토 국가의 관할권 수립은 “뚜렷한 절차적 그리고 실체적인 사법 평가 사이의 논리적 선후 관계의 용납할 수 없는 역전”을 초래한다.

본안에서 주검찰청은 헌법재판소가 전해진 바에 의하면 헌법 제10조 1절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규범들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그 규범들에게 헌법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단언한 사실에 주의를 불러일으킨다.

헌법재판소는 면제권과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사법적 보호의 권리 사이의 충돌을 특별법 우선(lex specialis)의 원칙—예컨대, 외국에게 속지적 관할권으로부터 면제권을 부여할 필요에 내제된 우세한 이익의 관점에서 헌법 제24조가 규정한 원칙의 제한을 인정함으로써 헌법은 정당화될 수 있다—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했다고 알려졌다. 외국의 면제권을 존중해야 할 필요의 관점에서 방어권 범주의 합리성을 고려할 때, 의문이 제기된 조항들의 합헌성에 대한 질문은 근거가 없다고 한다.

또한 주검찰청은 외국의 면제권을 존중할 책임이 다른 의문이 제기된 조항들, 특히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ICJ의 결정들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하는 유엔 헌장 제94조(제848/1957호 법에 의해 이탈리아 법률 체제에 수용된)와 그 자체로 유엔 헌장 제94조를 보충하는 제5/2013호 법률 제3조에 의해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주검찰청에 의하면 (앞서 언급된 유엔 헌정 제94조에 확립된 대로) ICJ의 결정과 더불어 국제관습법을 준수해야 할 이탈리아의 의무는 이탈리아 헌법 제11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탈리아가 국제관습법을 존중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내용은 유엔 헌장에 따라 이탈리아가 준수해야하는 ICJ의 판결에 정의되어 있다.

3. – 청구인들은 세 사건(제84, 85, 그리고 113/2014호 명령)의 주된 소송 모두에 출석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가 피렌체 재판소에 의해 제기된 질문들을 수용하기를 요구했다.

3.1. – 첫째로, 주된 소송에서 청구인들의 변호인은 손해배상 소송이 67년 후에야 제기된 이유는 독일연방공화국과 연합국들이 합의한 모라토리엄(moratorium)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한다. 이탈리아도 평화협정의 제18조에 따라 모라토리엄을 준수해야 했다. 또한 변호인은 모라토리엄이 종료된 후 배상 요구는 독일연방공화국에 의해 거부되어 왔으며, 독일연방공화국은 제3제국과 그 정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구제도 부인해 왔다는 사실도 주목한다.

특히, 피렌체 재판소가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 주요 소송에서 청구인들의 변호인은 다수의 예비적 의견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국제사회의 국가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1945. 6. 26.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의 구별없이 인권과 근원적인 자유를 존중하기로 동의(유엔 헌장 제1조 제3절과 제55조 c항)한 점을 상기한다. 이러한 권리들 중에는 후에 국제 인권 보호 시스템(“국제인권법의 광범위한 침해 및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배상에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침”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안 제60/147호)의 초석이 된 사법 접근권(1966. 12. 19.에 체결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제14조)이 있다. 그러므로 인권 보호와 (국가들의 관할권 면제와 관련된 이슈인) 내정 불간섭의 원칙간의 충돌은 기본적 권리를 희생하면서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은 제5/2013호 법률이 헌법 제24조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일 뿐만 아니라, 본 사안에 관할권 있는 법원에의 재판 청구권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들을 보호하는 국제법과도 충돌된다는 점에서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변호인은 ICJ가 월권한다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피렌체 재판소가 제기한 합헌성의 문제를 수용하기를 요구한다.

나아가 변호인은 현대 국제법에 따르면 이탈리아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쟁점이 된 조항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탈리아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와 제117조와도 충돌한다. 쟁점이 된 조항들이 개인들이 민법과 행정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한 본 조항들은 국제관습법 및 전통적 국제법과 충돌한다.

위의 관점에서 변호인은 주요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제5/2013호 법률이 헌법 제24조, 제11조, 그리고 제117조를 위배함에 따라 위헌임을 공표하고 이탈리아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럼으로써 ICJ의 2012. 2. 3. 판결의 간접적인 효과 또한 배제하기를 요구한다.).

[생략]

4. 공판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과 각료회의 의장은 헌법재판소에 그들이 제출한 변론문에 나와 있는 의견들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법적 결론*

1. 피렌체 재판소는 재판소가 독일연방공화국에 제기된 세 소송과 관련해서 (피고가 주장한대로) 그 관할권을 부인하도록 요구하는 특정 조항들의 합헌성에 질문을 던진다. 이 소송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대에게 잡혀가 독일로 보내져 강제수용소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된 세 명의 이탈리아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시작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렌체 재판소는 다음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1) 2012. 2. 3. 독일 대 이탈리아(Germany v. Italy) 사건 판결에서 ICJ가 해석했듯이 “헌법 제10조 1절에 의해 우리 법률 체제에 수용되어 형성된, 다른 국가에서의 민사재판에 국가면제권을 부여하는 국제 관습” 규범의 합헌성 — 본 규범은 제3제국 군대가 1943~1945년 사이에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이탈리아 국민들을 상대로 자행된 침범할 수 없는 인권의 침해로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주권적 행위로 간주하고, 따라서 민사 법원의 관할권에서 제외된다는 관점에서;

2) 유엔헌장 적응법률 제1조(“1945. 6. 16.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유엔 법령의 실행”에 관한 1957. 8. 17. 제848호 법률)의 합헌성 — 본 조항은 ICJ가 이탈리아 영토에서 제3제국이 주권적 행위로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탈리아 법원들의 관할권을 부인할 의무를 확립했을 때에도 국내 재판관이 ICJ의 판결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측면에서;

3) 2013. 1. 14.의 제5호 법률(국내 법률 체제의 개정을 위한 규정들과 더불어 2004. 12. 2. 뉴욕에서 서명된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의 이탈리아 공화국의 승인) 제1조(정확히는 제3조)의 합헌성 — 심지어 그러한 행위들이 제3제국 군대가 1943-1945년 사이에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이탈리아 국민들을 상대로 자행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와 같이 국제인도법과 기본적 권리의 중대한 침해가 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은 국내 법관들이 ICJ 판결을 준수하도록 하고, 따라서 그에 따라 외국의 주권적 행위로서 저질러진 행위들과 관련된 미래의 사건들에서 그 관할권을 부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관점에서.

앞서 언급된 규범들은 헌법 제2조와 제24조에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다. 이 규범들은 헌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법적 보호의 절대적인 보장의 원칙과 충돌한다. 왜냐하면 그 규범들은 주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저지른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들이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사법심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법적 보호의 절대적인 보장의 원칙은 이탈리아 헌정 질서의 최우선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은 헌법 제10조 1절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규범들과 헌법 제11조가 추구하는 목표를 증진시키는 국제기구들을 수립하거나 그러한 기구들로부터 파생된 조약들과 수용법의 주체에 포함되어 있는 규범들의 국내 법률 체제로의 도입에 제한이 된다.

하급심 재판관은 2012. 2. 3. 판결에서 ICJ는 주권적 행위로 여겨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다른 국가의 사법관할권으로부터 국가들의 면제권을 확립하는 국제관습규범의 지속적 존재를 지지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와 같이 ICJ는 제3제국 군대가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이탈리아 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추방, 강제노동, 집단학살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서 분명히 인정되었듯이 근원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전쟁 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주권적 행위와 관련하여 예외의 형성을 배제한다. 또한 ICJ는 실체적인 강행법규 규범(국제인권법)과 절차적인 규범(다른 국가들의 관할권으로부터의 국가면제)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대립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렌체 재판관은 비록 ICJ가 국제법 해석과 관련해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제관습규범에 부합하는 국내 규범 – 기본 원칙들과 불가침적인 권리들의 사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 헌법적으로 보장된 불가침적인 권리들에 의해 제한되는 - 과 관련한 수용 조항들의 합헌성에 문제를 제기한다.

하급심 재판관은 “만약 국제면제권이 ICJ가 결정한대로 절대적인 성격을 부여받는다면, 영향을 받은 개인들은 독일법률체계에 의해 이미 부정당한 사법조사와 구제의 모든 가능성을 부정당하게 된다”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회부 명령 제84/2014호 7쪽, 제85/2014호 7쪽, 제113/2014호 7쪽).

이에 따라 하급심 재판관은 유엔헌장 수용법률(제848/1957호 법률 제1조)과 뉴욕협약 승인법률(2013년 제5호 법률 제3조)에 담겨 있는 조항들의 합헌성에 대해 유사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 조항들은 앞서 언급된 국제관습규범과 비슷하게 법관이 ICJ 판결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을 부정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피렌체 재판소는 이 규범들이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관할권 행사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 각 조항들의 합헌성은 주요 판결에서 독립된 연관성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나아가 하급심 재판관은 손해배상청구를 심의할 관할권 문제에 제기된 질문들을 제한하고, 이행강제 소송의 문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세 사건 모두에서 제기된 요구와 주장이 같은 바, 그 요구와 주장은 공동으로 논의되고 결정될 것이다.

2. – 사전에 헌법 재판소는 피렌체 재판소가 제기한 합헌성 문제의 허용성에 대한 반대를 평가해야 한다.

2.1. – 첫 번째 반대와 관련해서 주검찰청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관할권 면제는 이탈리아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형성된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관습법 규범에 따르며, 따라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1979년 제48호 판결(사실관계의 결론 2번째 단락 참조)에서 국제관습규범의 위헌심사는 오직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형성된 규범들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반대는 근거가 없다.

실제로, 주검찰청이 언급한 즈음에 헌법재판소는 “호혜적 관계에서 몇 백년이 된 국가의 관습”을 분명히 정의하는 외교 행위자의 면제권에 대한 국제관습규범의 합헌성을 정확히 심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비엔나협약 제31조 1절과 3절에 관한 제804/1967호 법률에 담겨 있는 집행 명령과 관련하여 하급심 재판관에 의해 제기된 질문은 형식적으로는 정확하다. 그 이유는 관련한 부분에서 관례적인 조항은 단지 위에 설명된 일반적인 국제법 규범을 선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그 후자의 규범에 관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의 실제 주제는 국제관습이 수용된 국내규범과 위에 언급된 헌법원칙 사이의 양립가능성에 관한 것이다”라고 명시했다(법적 결론 3번째 단락).

그 판결 후반에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어떠한 경우라도 헌법 제정 후에 생겨난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관습법과 관련해서,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자동적 수용 메커니즘은 국민 주권과 헌법의 견고성 위에 세워진 헌법 구조 안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의 위반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이 상기되어야 한다”(법적 결론 3번째 단락).

주검찰청이 내린 제48/1979호 결정의 해석이 옳든 아니든, 헌법재판소는 특히 1956년 제1호 판결에 명확하게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위헌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오직 헌법 다음에 생긴 법들에게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법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정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문헌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134조와 1948. 2. 9.의 헌법 제1호 법률 제1조는 모두 그 어떤 구별없이 법의 합헌성에 대한 질문을 다룬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인 법과 헌법 사이의 관계 및 법원의 상하관계에서의 각각의 지위는 일반적인 법이 헌법 전에 생겼는지 후에 생겼는지와 관계 없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제1/1956호 판결에 피력된 원칙, 즉 그에 따라 합헌성의 지배력이 공화국 헌법 후에 온 규범들과 전에 온 규범들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칙은 그들이 헌법 전에 생성되었는지 후에 생성되었는지와 무관하게 헌법 제10조[[1]](#footnote-1) 1절에 자동적으로 수용된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관습법 규범들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헌법 제10조 1절에 의해 국제관습법에 회부되는 규범은 헌법 제134조가 그 구체적 가능성을 명백하게 고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심사에서 배제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또는 헌법적인) 정식적인 법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지지만 입법 절차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그 효과를 가지는 모든 법, 행동, 그리고 규범 - 앞서 언급된 국제관습규범 포함 - 은 집중된 헌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본 헌법재판소의 감시는 오로지 위계적으로 법률의 하위에 있는 행위들을 배제하며 법률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요약하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국제관습의 헌법심사를 배제하거나 헌법심사를 헌법 후에 생겨난 관습들에만 제한할 이유가 없다. 후자는 이전에 형성된 관습들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 두 종류의 관습법들 모두 헌정 질서를 확인하는 요소들, 다시 말하자면 기본 원칙들과 불가침적인 인권들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므로 각료회의 의장의 변호인에 의해 제기된 첫 번째 반대는 근거가 없다.

2.2. 두 번째 반대는 “뚜렷한 절차적 그리고 실체적인 사법평가 사이의 논리적인 우선 순위 관계의 용납할 수 없는 뒤바뀜”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로 관할권의 부재가 주권적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들의 국가 면제권에 대한 국제 규범의 범위에 기초하여 평가될 수 없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 반대 또한 충분한 근거가 있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단순하게 관할권과 관련한 이의는 필연적으로 당사자들이 진술한대로 청구에 제기된 주장의 검토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2.3. – 또한, 예비적으로, 추가적인 헌법적 한계를 적용함으로써 사건의 주제를 넓히려는 목적의 개인 당사자의 진술은 채택할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되어야 한다.

부수적인 헌법적 검토의 주제는 회부 명령(제32/2014호 판결, 제271/2011호 판결, 제56/2009호 판결)에 나타난 대로 조항들과 한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재판소에 출석했던) 청구인이 헌법 제117조 1절과 제117조를 통해 제기한 국제법 규범에 관련된 주요 소송에서 제기한 합헌성의 문제는 고려될 수 없다.

2.4. – 마지막으로, 비록 세 개의 회부 명령의 작동 부분은 모두 제5/2013호 법률 제1조를 문제가 제기된 조항들 중 하나로 보지만, 세 명령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소송은 2004. 12. 2.의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유엔 협약 가입 승인을 담고 있는 제1조보다는 2012. 2. 3. ICJ의 판결이 단언하는대로 일상적인 적응 절차에 따라 ICJ의 결정을 수용하는 동 법률 제3조와 관련이 있는 것이 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5/2013호 법률 제1조가 아니라 제3조는 헌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는 일관된 헌법적 법리와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제기된 조항과 관련하여 분쟁의 주제는 식별되어야 하고 명령의 동기와 회부의 문맥을 유념해야 한다(여럿 중 제258/2012호와 제181/2011호 판결, 제162/2011호 법원 명령).

3. – 본안에서 “헌법 제10조 1절이 다른 국가의 민사관할권으로부터 국가 면제를 부여하는 국제관습을 수용함에 따라 우리 법률 체계에 형성된” 규범의 합헌성에 대한 질문은 아래에 나열된 조건에 따라 근거가 없다.

3.1. – 첫째로, 하급심 재판관이 본 재판소에 제기된 주제에서 다른 국가의 민사 관할권으로부터 국가 면제를 부여하는 국제관습법의 규범에 대해 ICJ가 제시한 해석의 평가를 배제한 점이 상기되어야 한다.

물론 본 재판소는 그와 같은 제어를 행사할 수 없다. 국제관습은 이탈리아 법률 체계의 외부적인 것이며, 헌법 제10조 1절의 위임의 결과로 정부나 법관에 의한 그 적용은 일치의 원칙, 즉 국제 법률 체계인 본래의 법률 체계에 제시된 해석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 관련 규범은 ICJ에 의해 독일연방공화국에게 책임이 있는 행위에 관한 이탈리아 법관의 관할권 행사에 대하여 독일과 이탈리아 사이의 분쟁을 정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 것이다.

2012. 2. 3. ICJ는 판결에서 당분간은 국제관행에서 근원적인 인권을 위반하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인 범죄의 경우 주권적 행위에 대한 다른 국가의 민사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하는 규범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그러한 범죄들이 자행됐다는 사실은 ICJ가 확립했고 독일도 인정했다.

동 재판소는 또한 이탈리아 법관들의 관할권 부재는 외국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은 개인들의 기본적 권리의 희생을 수반함을 분명히 인정했다(판결 144쪽 104단락 참고). 이는 앞서 언급된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다른 사법 구제 방안의 존재를 배제한 독일연방공화국의 변호인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2010. 10. 5. 독일연방공화국의 답변 11쪽 34단락). ICJ는 새로운 협상의 개시만이 국제법상 이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법 차원에서 주권적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민사재판권으로부터의 국가 면제와 관련한 ICJ의 국제관습법 해석은 특히 적격한 것이며 정부와 본 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당국들에 의한 추후 검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스트라스부르 법원이 유럽인권조약의 규범 해석에 관하여 내린 제348호과 349/2007호 판결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실제로 하급심 재판관은 ICJ가 제시한 주권적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의 면제라는 국제 규범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는다. 재판관은 (염려스럽게) 그 규범의 범위는 ICJ에 의해 그렇게 정의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나아가 재판관은 독일연방공화국에 책임이 있는 행위들은 불법적이며 독일과 ICJ가 근원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전쟁 범죄이며 반인도적인 범죄라고 인정한 점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상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주요 청구의 본안에 속하며, 그렇기 때문에 본 재판소에 제기된 주제의 범위 밖에 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안, 즉 국제 법률 체제에서 해석된 대로 국내 법률 체제에 통합되고 적용된 국제범 규범 (헌법 제10조 1절을 통해 헌법과 계층적으로 대등한 규범)과 헌법의 규범과 원칙 사이의 예상된 충돌이, 해석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한,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것이 근원적 인권 보호의 원칙을 포함한 국가헌정질서의 필수적인 원칙의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법률 체제의 기본 원칙의 불가침권을 지키기 위한, 또는 최소한 그 원칙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적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내 법관, 특히 전적으로 본 재판소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는 정확하게 피렌체 재판소가 위에 인용된 합헌성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본 재판소에 제기한 주제이다. 피렌체 재판소는 ICJ가 해석한 대로 다른 국가의 민사재판권으로부터의 국가면제를 부여하는 국제 규범의 양립가능성을 우리 헌법 질서의 기본 원칙, 즉 근원적 인권 보호의 원칙(제2조)과 더불어 재판을 받을 권리(제24조)에 입각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사건에서 본 재판소가 그 권한 내에서 이행 할 일상적인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논의 중인 사건에서와 같이 두 규범이 모두 헌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헌법적 양립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분명 가능하다(제236/2011호 판결).

3.2 – 본 재판소가 몇 차례 지지한 바와 같이,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과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은 “헌법 제10조 1절 상 이탈리아 법률 체제가 준수하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규범의 (...)도입을 제한”(제48/1979호와 제73/2011호 판결)하며 유럽연합 법에 대한 가입에 ‘역제한’(여럿 중 제183/1973호, 제170/1984호, 제232/1989호, 제168/1991호, 제284/2007호 판결)이자 라테란 협정 집행법 가입에 대한 제한(제18/1982번, 제32번, 제31번, 그리고 제30/1971번 판결)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 그들은 헌정 질서의 한정하는 근원적 요소들을 상징한다. 이에 따라 그들은 헌법 심사의 범주 밖에 있다(제1146/1988호 판결에서 명시되었듯이 헌법 제138조와 139조).

집중화된 헌법심사제도에서 이 양립가능성의 평가는 국제관습법에 관해서도 다른 법관과는 관계가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와만 관계가 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어떤 규범이 헌법적인 법과 부적합한지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는 명백하게 국가의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이나 불가침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을 포함한다. 이 대조를 검토하는 것이 헌법 법관만의 과제이다. 이 집중화된 헌법심사제도에서 다른 해결책은 가장 첫 사건에서 “법의 위헌성 선언은 헌법 제136조에 따라 오직 본 재판소만이 내릴 수 있다”(제1/1956번 판결)라고 명시한 본 재판소에게 헌법이 부여한 독점적인 권한을 거스른다.

나아가 본 재판소는 최근에도 헌법재판소가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과 인권 보호 원칙의 양립가능성의 심사에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재확인했다(제282/2007호 판결). 또한 사법 접근권(헌법 제24조)에 관해서 본 재판소는 근원적 인권의 존중과 제한 불가능한 원칙의 이행은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보장된다고 단언했다(제120/2014호 판결).

3.3 – 다른 국가의 사법재판권으로부터의 국가면제권을 제공하는 국제관습규범은 모든 국가 행위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본래 절대적이었다. 좀 더 최근들어 20세기 초반에 이 규범은 사적 행위(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가 적절한 제한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국가의 국내 판례에 의해 진보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리고 이 면제 규범의 적용 제한은 계속해서 이탈리아 법관들(1906. 6. 8. 피렌체 재판소, Rivista di Diritto Internazionale 1907, 379; 대법원 1926. 3. 13., 같은 곳 1926, 250; 1933. 1. 18. 나폴리 항소법원, 같은 곳 1927, 104; 1932. 1. 23. 밀라노 항소법원, 같은 곳 1932, 549; 1933. 1. 18. 대법원, 같은 곳 1933, 241)과 벨기에 법관들(1903. 6. 11. 대법원, Journal de Droit International Prive 1904, 136; 1920. 6. 24. 브뤼셀 항소법원, Pasicrisie Belge 1922년, II, 122; 1933. 5. 24. 브뤼셀 항소 법원, Journal de Droit International 1933년, 1034), 소위 ‘이탈리아-벨기에 이론’에 의해 수립되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요컨대, 다른 국가의 민사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권이 주권적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에만 부여되었기 때문에 국내법관들은 국제관습규범의 범주를 제한했다. 그 의도는 주로 최소한 국가가 사적 개인으로 행동했을 경우만이라도 면제의 혜택을 제한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상황은 사적인 체약당사국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규범의 내용이 진보적으로 확인되는 과정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확립되어 왔다(제329/1992호 판결). 보통 국내 법원들이 그들의 권한을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고, 관습법과 그 진화를 확인할 목적으로 관행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기구들에게 맡김에 따라 위에 설명된 진화는 국내 판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권리 보호를 위한 면제권의 축소가 일어남에 따라, 이탈리아 법률 체제는 (제한적인 보장들만으로 권리의 인정이 지지되는) 유동적인 헌법으로 특징지어지는 제도적 시스템에서 보통 법관들이 행사하는 규제 덕분에, (견고한 헌법이 보장하듯 권리 보호와 그에 따른 권력의 제한에 입각한) 공화국의 헌정 질서 내에서 같은 규제의 행사는 불가피하게 본 재판소에 있다. 이 권한은 헌법의 존중과 특히 헌법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고, 따라서 다른 국가의 민사재판권에 대한 국가면제권을 부여하는 국제 규범과 그 기본 원칙 간의 양립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본 재판소에 있다. 그 결과는 국내 법률 체제에서만 유효한 이 규범의 범주의 추가적인 축소이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이는 바람직하고 – 그리고 많은 국가가 바라는 - 국제법 자체의 진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3.4-뿐만 아니라, 국제 법률 체제에서 해석되어 있듯이 외국 국가들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권을 갖게 하는 국제관습 규범이 기본 원칙들과 불가침적인 권리들과 충돌하지 않음에 따라 헌정 질서에 수용될 수 있는지를 본 재판소가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10조 1절의 맥락에서도 그러한 규제는 필수적이다. 반면, 만약 충돌이 있다면 “국제 규범의 적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제311/2009호 판결). 이에 따라 국제 규범의 수용과 이에 따른 적용은 그 규범이 불가침적인 원칙들과 권리들과 충돌되는 한 불가피하게 배제될 것이다.

이것이 정확하게 현재 사건에서 발생한 일이다.

본 재판소는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들에 제24조가 보장하는 예컨대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변론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이는 이슈가 되는 권리가 근원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동되었을 때에 특히 더 그렇다.

현 사건에서 하급심 재판관은 본 재판소에게 요구된 합헌성 심사에서 헌법 제2조와 제24조는 분리할 수 없게 함께 엮여져 있다는 점을 적절히 보여주었다. 첫 번째 제2조는 헌법 헌장의 기본 원칙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 - 이것이 현 사건에서 중대한 점이다 - 을 포함한 기본 인권의 불가침성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조항이다. 두 번째 제24조도 개인의 불가침적인 권리들을 발동하기 위하여 개인의 사법 접근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의 안전 장치이다.

비록 이 두 조항은 다른 영역인 실질적인 영역과 절차적인 영역에 속하지만, 이들은 다른 국가의 사법관할권으로부터 국가의 면제에 대한 규범의 헌법적 병존가능성 문제에서 공통적인 관련성을 공유한다. 만약 어떤 권리가 효과적인 보호를 얻기 위해서 법관 앞에서 다뤄질 수 없다면, 그 권리의 어느 정도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미 유럽공동체법에 관한 제98/1965호 판결에서 본 재판소는 효과적인 사법보호에 대한 권리가 “헌법 제2조에 의해 보호되는 불가침적인 인권 중 하나이다. 이는 또한 유럽인권협약 제6조가 이 원칙에 부여한 심의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법적 결론의 두 번째 단락)라고 했다. 더 근래에 본 재판소는 사법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느 분쟁에서든 간에 법관과 판결을 보장할 의무와 연결되어 있는 헌정 질서의 최고의 원칙 중 하나”로 명백히 정의했다(제18/1982호, 제82/1996호 판결).

기본적 권리에 대한 사법적 보호의 효과성에 주의하여 본 재판소는 또한 “권리의 인식은 사법 절차에서 법관 앞에 그 권리들을 적용할 힘의 인식과 함께 간다. 그러므로 개인의 권리 옹호를 위해 법적 구제에 호소하는 것은 헌법 제24조와 제113조가 보장하는 하나의 권리이다. 이 권리는 성격 상 침해될 수 없으며 법의 지배에 근거한 민주 국가의 특징적인 권리(제26/1999호, 제120/2014호, 제386/2004호, 제29/2003호 판결)”라고 상기했다. 나아가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와 불가침적인 권리의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는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 체계에서 법적 문화의 가장 중대한 원칙들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에 구상되어 있는 국가들의 관할권 면제 사건들과 관련해서 본 재판소는 외국 국가들이 연관된 사건들에서는 사법적 보호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한을 넘어서 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제한은 헌정 질서의 “최고 원칙” 중 하나인 헌법 제24조의 원칙보다 잠재적으로 우세한 공익의 이유들로써 정당화되어야 한다(제18/1982호 판결). 나아가 제한을 확립하는 조항은 구체적인 사건에 비추어 공익의 엄격한 평가를 보장해야 한다(제329/1992호 판결).

현 사건에서 ICJ가 그 범위에서 정의한 외국의 국가면제에 대한 국제관습 규범은 반인도적 범죄와 근원적 인권의 중대한 침해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사할 국내법원의 관할권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사법적 보호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희생을 수반한다. 이는 국제적인 측면에서 이 사안의 해결책은 새로운 협상의 개시와 같은 외교적인 수단만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고려한 ICJ도 인정했다(2012. 2. 3. 판결 102번째 단락).

또한, 헌정 질서에서 심각한 범죄로 손상된 기본적 권리인 사법적 보호에 대한 권리(헌법 제2조, 제24조)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우세한 공익은 확인될 수 없다.

외국의 관할권 면제는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쉽게 옹호될 수 있으며 논리적인 관점에서는 더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국 국가의 주권 기능과 같은 공권력 행사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만 관할권 면제는 헌법적인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불가침적인 권리인 사법적 보호의 원칙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

본 재판소가 재차 확인한 바와 같이(헌법 제11조와 관련해 제284/2011호, 제168/1991호, 제232/1989호, 제170/1984호, 제183/1973호 판결; 헌법 제10조 1절과 관련해서는 제73/2001호, 제15/1996호, 제48/1979호 판결; 또한 제349/2007호 판결), 헌정 질서의 요소인 기본 원칙과 불가침적인 인권의 존중은 (또한 평화와 정의의 원칙에 영감을 받고 그 원칙의 실현을 위해 이탈리아가 헌법 제11조에 의해 주권의 제한에 동의한, 원만한 국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관점으로) 국제적인, 그리고 초국가적인 체제에 대한 이탈리아 법률 체제의 수용성(헌법 제10조, 제11조)을 나타내는 한계이다. 이는 그 자체로 추방, 강제 노역, 그리고 집단학살과 같이 반인도적인 범죄로 인정된 행동들이 국내 법률 체제에서 그 범죄 피해자들의 불가침적인 권리들의 사법적 보호의 완전한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한다.

헌법 제2조와 제24조가 이탈리아 법관에게 부여한 관할권으로부터 외국 국가에게 면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주권 기능을 보호한다. 이 면제권은 정부 권력의 전형적인 행사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명백하게 불법적이라 고려되고 인정되는 행동들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이는 현 사건에서 ICJ가 인정했고 독일연방공화국이 ICJ에서 인정했듯이(위 3.1단락 참조), 그 행동들이 불가침적인 권리들의 침해이기 때문이다. 이 권리들은 ICJ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듯이 효과적인 구제를 박탈당했다. ICJ는 “국제법에 의한 독일의 관할권 면제가 해당 이탈리아 국민들의 사법 구제 방안을 불가능하기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명시하며(104단락) 협상의 재개시를 희망했다.

그러므로 인권 중심성으로 특정되고 외부 법원에 대한 헌정 질서의 수용성(제349/347호 판결)으로 강조된 제도적 맥락에서는 논의 중인 범죄 피해자들의 근원적 권리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부정하는 것은 (다시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헌법의 두 최고의 원칙을 전적으로 불균형하게 희생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물론 그 권리들은 국가의 정부 권력 행사를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현 사건에서와 같이 국가 행위가 불가침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고려될 경우에도 희생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 권력의 합법적 행사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민주주의 체계에서처럼 이탈리아 헌법도 확립한 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개인 권리들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를 요구한다(헌법 제24조에 명시된 권리 사법적 보호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최근 판결 제182/2014호와 119/2013호, 또한 281/2010호와 77/2007호 참조)는 점이 상기되어야 한다.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재판소는 과거에 공동체 법률 체제에서 사법적 통제 시스템은 헌법 제24조가 제시한 필요 요건들과 대등한 사법 보호의 필요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했다(제98/1965호 판결). 그러나 본 재판소는 EU사법재판소가 나중에 인정된 권리들을 원용한 당사자들을 위한 예심 결정에서 판결의 유익한 효과를 지연시키는 관행을 다른 방식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예비 결정에 대한 참조의 기능은 물론 좌절되었고 요구된 사법 보호의 효과성 또한 강력하게 축소되었다. 이는 본 재판소 심의의 목적에서, 이탈리아 헌법이 수립한 법관에게 판결을 받을 권리의 필요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이 문제에 대해 EU사법재판소의 법리를 바꾸도록 이끈 제232/1989호 판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직(제재 위원회)이 작성한 잠재적 테러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개인들의 자산 동결을 규정하는 이사회 규정의 취소 소송에 관하여 EU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상기하는 것 또한 대등하게 중요하다. 첫째, EU사법재판소는 근본적으로 지역사법제도가 관할권이 결핍되어 있다는 1심 법원의 결정을 거부했다. 반대로 EU사법재판소는 지역사법제도가 유엔 안보이사회의 결의안을 실행하도록 설계된 EU의 조치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모든 EU의 행동들의 합법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본 재판소는 국제적 합의에 의해 부여된 의무가 모든 EU의 행동들이 기본적 권리를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고 했다.

그 결과, 유엔 시스템에 기본적 권리의 존중을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지역 규칙은 취소되었다(2008. 9. 3. EU사법재판소 판결, 사건 C-402와 415/05 P 316ff, 320ff. 단락).

3.5.-본 사건에서 ICJ가 인정했고 독일연방공화국이 ICJ에서 확인했듯이 기본적 권리의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의 불가능은 ICJ가 정의한 국제법과 헌법 제2조와 제24조 사이의 분명한 차이를 만든다.

다른 국가의 민사 관할권으로부터 국가 면제를 부여하는 국제법이 주권적 행위로 여겨지는 행동들을 포괄하고 그 행위가 국제법과 근원적 인권을 위반하는 한, 이 차이는 본 재판소로 하여금 국제법이 그러한 중대한 위반으로 초래된 손해배상소송에 면제권을 확대하는 범위내에서는 헌법 제10조 1절의 적용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도록 만든다.

결과적으로, 국가관할권 면제법이 앞서 언급된 헌법의 기본 원칙들과 충돌하는 한, 이 면제권은 이탈리아 법률 체제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고, 따라서, 이탈리아 법률 체제에서 그 어떤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헌법 제10조 1절이 다른 국가의 민사관할권에 대해 국가면제를 부여하는 국제 관습법을 수용함에 따라 우리 법률 체제에 형성된” 규범과 관련해 하급심 재판관이 제시한 의문은 근거가 없다. 헌법 제10조 1절에 따라 우리 법률 체제가 따르는 국제법은 불가침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경우에 민사관할권으로부터 국가를 면제하는 규범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권리들은 필요한,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를 빼앗기지 않는다.

4. – 유엔헌장 적응법률 제1조(1957. 8. 17. 제848호 법률)의 합헌성 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결론들이 도출될 수 있다. 본 조항은 유엔헌장, 그리고 특히 “유엔의 각 회원국은 각 회원국이 당사자인 어떠한 사건에도 ICJ의 결정을 따른다”고 규정하는 제94조를 실행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헌법 제2조와 제24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조항은 본 사건에서와 같이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인 범죄와 같은 국제인도법과 기본적 권리의 심각한 위반을 구성하는 외국의 행위의 사건에서, ICJ의 판결이 이탈리아 법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할권을 부정할 의무를 수립할 때조차도 국내 법률 체제가 ICJ의 판결에 따르도록 요구한다.

4.1 – 아래에 펼쳐진 조건들에 따르면 그 질문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제848/1957호 법률 제1조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1945. 6. 26.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유엔헌장을 “완전히 실행”하도록 했다. ICJ는 유엔의 주요사법기구(제92조)로 설립(제7조)되었으며, ICJ의 결정들은 회원국이 당사자인 모든 사건에서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제94조). 이 구속력은 적응특별법률(비준과 실행 명령의 승인)을 통해 국내 법률 체제에서 효력를 발생한다. 이는 이탈리아가 유엔과 같이 국가간 평화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기구들에 호의를 보이기 위해 동의한 주권을 제한한 경우이다(헌법 제11조). 그러나 이는 항상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 원칙과 불가침적인 권리들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제73/2001호 판결). 그러므로, 유엔헌장 제94의 수용으로 인해 부과된 ICJ의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는 ICJ가 이탈리아로 하여금 제3제국이 이탈리아 영토에서 주권적 행위로서 저지른 기본적 인권의 침해인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심리에서 이탈리아의 관할권을 부정하도록 한 ICJ의 판결을 포함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서든 보편적인 국제법의 외국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에 불가침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된 주권적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의 사건들을 포함한다고 해석한 ICJ의 판결과 관련해서 유엔헌장 적응법률과 헌법 제2조와 제24조 사이의 충돌은 전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일어난다. 반복적으로 상기되었듯이, 기본권의 사법적 보호는 “헌정 질서의 최고 원칙”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의문이 제기된 조항(적응법률 제1조)은 이 원칙에 반대될 수 없다. 이 조항이 기본권의 사법 보호에 대한 권리의 노골적인 침해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심리에서 관할권을 거부하도록 하는 ICJ가 내린 2012. 2. 3. 판결에 이탈리아와 이탈리아 법원이 따르도록 하는 한.

다른 모든 경우에서도 유엔헌장 가입에 따라 부과된 ICJ의 판결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 모든 국제적 의무를 이탈리아가 지켜야 할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명확하다.

우리 법률 체제로 규약상 규범[유엔헌장 제94조]이 수용되는 과정에서의 장애 – 비록 오로지 본 사건을 위해서라도 - 는 외부의 규범 자체의 합법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따라서 적응특별법은 위에 언급된 헌법의 기본 원칙들과 상충되는 한 그의 위헌성 선언을 피할 수 없다(제311/2009호 판결).

이는 본 재판소의 일관된 관행과도 일치한다. 제18/1982호 판결에서 상당부분 드러났듯이 본 재판소는 “정교화약 제34조 4, 5, 6절과 1929. 5. 27. 제847호 법률 제17조(결혼 관련 바티칸 시국과 이탈리아가 1929. 2. 11. 맺은 정교화약의 이행을 위한 조항들)의 실행에 관한 1929. 5. 27. 제810호 법률 제1조(1929. 2. 11. 로마에서 바티칸 시국과 이탈리아 사이에 체결된 조약, 네 부록, 그리고 정교화약의 실행) 제1조의 위헌성을, 특히 본 조항들은 상고법원이 성립되지 않은 결혼에 대해 종교법을 민법 상 이행하도록 결정내릴 수 있고 혼인기록 옆에 혼인상태기록란에 표시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결정한 범위내에서 결정한 바 있다(같은 맥락에서 제223/1996호 판결, 제128/1987호 판결, 제210/1986호 판결, 제132/1985호 판결).

적응법률 제848/1957호의 나머지는 반박의 여지가 없이 온전히 시행 중이며 효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유엔헌장 제94조의 실행과 관련하여 제848/1957호 적응법률 제1조는 이탈리아 법원들로 하여금 ICJ의 2012. 2. 3. 판결, 즉 불가침적인 인권을 위반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외국의 행위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탈리아 법원들이 그 관할권을 부인하도록 요구하는 판결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한해서 위헌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5. – 마지막으로, 제5/2013호 법률 제3조의 합헌성에 대한 질문이 검토되어야 한다. 하급심 재판관이 다른 질문들을 옹호하며 제시한 비슷한 주장들을 근거로(위 3단락과 그 다음 참조), 그 재판관은 헌법 제2조와 제24조에 관하여 앞서 언급된 제5/2013호 법률 제3조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이 조항이 논의 중에 있는 사건에서와 같이 제3제국이 이탈리아 영토에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심리에서조차 국내 법관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할권을 부인하도록 요구하는 ICJ의 판결에 따르도록 하기 때문이다. 하급심 재판관에 따르면, 그 조항은 비록 주권의 행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사법적 보호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이탈리아의 영토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들이 겪은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검토와 피해 배상을 배제하는 한, 헌법 제2조와 제24조에 내재된 불가침적인 권리들의 사법적 보호의 원칙과 충돌한다.

5.1. –이 질문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

질문이 제기된 조항은 제5/2013호 법률의 범주 안에 있다. 이 법에 따라 이탈리아는 2004. 12. 2. 뉴욕에서 채택된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유엔협약의 가입과 완전한 실행을 인가했다. 서른번 째 비준문서의 기탁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되는 그 협약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가 관할권 면제에 대한 국제관습법의 원칙을 조약에 포함시키고, “특히 자연인 또는 법인과 국가의 거래에서 법적 확실성”(전문에 명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면제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들(예컨대, 상거래, 고용 계약, 그리고 개인 상해와 재산 피해 – 각각 제10조, 제11조, 제12조)을 확인함으로써 그 조약의 범주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탈리아 입법자는 제5/2013호 법률을 통해 앞서 언급된 협약을 국내 법률 체제에 수용시켰고, 그에 따라 그 협약의 모든 조항을 따라야한다.

위에 언급되었듯이 제1조는 가입 승인을 규정하고 제2조는 실행 명령을 규정한다. 또한, 의회는 문제가 제기된 제3조도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1. 유엔헌장 제94조 1절의 목적에 따라 (…) 이탈리아가 당사자인 분쟁을 다루는 판결에서 ICJ가 다른 국가의 특정 활동들이 민사관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했을 때, 같은 활동에 대한 분쟁에 대해 심의하는 재판관은 관할권의 존재에 대하여 이미 그들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최종의 효과를 지니는 잠정적인 판결을 내렸을 때에도 직권으로 소송의 어떤 단계에서건 그 관할권의 부재를 선언해야 한다. 2. 1단락에서 언급된 ICJ의 판결과 반대되는 최종 판결은 ICJ의 판결이 나중에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95조가 규정한 사유들과 더불어 민사 관할권의 부재로 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는 민사소송법 제39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2012. 9. 3. ICJ의 판결을 실행하는 통상의 적응 조항이다. 다시 말해 이 조항은 명확하게 이탈리아 국가로 하여금 ICJ가 외국의 특정 행동을 민사관할권으로부터 배제시킨 모든 판결에 따를 의무를 규정한다. 이는 소송의 어떤 단계에서던 재판관이 직권으로 관할권 부재를 선언하도록 요구하며 기 판결이 ICJ의 판결과 충돌할 경우 그 판결을 정정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사유를 제공한다.

본 조항이 그 판결을 명백하고 즉각적으로 존중하고 “헤이그 재판소에 제기된 분쟁으로 생긴 것과 같은 불운한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 (2012. 2. 3. ICJ 판결 직후) 채택되었다”는 점을 의회의 절차는 분명히 보여준다(국민회의 법률 제5434호, 제3위원회 – 외교 문제, 2012. 9. 19. 회의).

그리고 2012. 2. 3.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ICJ가 불가침적인 인권의 침해로써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여겨지는 행위들이 포럼국가의 영토에서 외국의 군대에 의해 자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국가를 민사관할권으로부터 면제하는 것을 인정한 사건들을 본 조항은 배제하지 않는다.[[2]](#footnote-2)

이와 같이 의문이 제기된 법은 또한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유엔협약에 명확하게 확립된 것으로부터 권위가 훼손된다. 이는 가입 당시 이탈리아 정부가 의탁한 해석상의 선언으로 확인된다. 이 선언은 포럼국가의 영토에서 군대의 활동으로 인해 야기된 피해와 상해의 경우에는 협약의 적용과 면제 규범의 제한을 명확하게 배제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제3조에 확립되어 있듯이 이탈리아 법관이 2012. 2. 3. ICJ 판결(이탈리아 재판소가 그 영토에서 외국이 주권적 행위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심리에서 침해된 기본권에 대한 아무런 사법적 구제 방안 없이 그들의 관할권을 부인하도록 요구하는 판결)을 따라야 하는 의무는 - 합헌성과 관련된 다른 질문들에 대해 위에 광범위하게 보여졌듯이(위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참조) - 헌법 제2조와 제24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의 사법적 보호의 기본 원칙과 배치된다. 위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외국에게 부여된 이탈리아 관할권의 면제로부터 기인한 기본권의 사법적 보호에 관한 권리 - 공화국 헌법 제2조와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탈리아 법규 명령의 최고 원칙 중 하나 - 의 완전한 희생은 불가침적인 인권의 침해인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여겨지는 행위들의 경우와 같이 면제권이 외국 정부의 불법적인 권력 행사를 보호하는 한 정당화될 수도 수용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제5/2013호 법률 제3조는 위헌이라 공표되어야 한다.

6. – 하급심 재판관이 관할권을 선언한 것은 주요 소송의 본안심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그 검토는 하급심 재판관의 의무이다.

신청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본 재판소에 제기된 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청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사실 또는 법적 문제에 대한 그 어떤 평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헌법재판소는

1) 2013. 1. 14.의 제5호 법률 제3조(2004. 12. 2. 뉴욕에서 체결된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유엔협약의 이탈리아 공화국의 가입과 더불어 국내 법률 체제의 개정을 위한 조항들)가 위헌이라 선언한다;

2) 1957. 8. 17.의 제848호 법률 제1조(1945. 6. 26.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유엔 헌장의 실행)이 위헌임을 선언한다. 본 조항이 유엔헌장 제94조의 실행에 관한 것으로, 불가침적인 인권의 침해인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외국의 행위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이탈리아 법원들로 하여금 그 관할권을 부인하도록 요구하는 2012. 2. 3.의 ICJ 판결에 이탈리아 법관이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한 그러하다;

3) 논증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재판소가 위에 언급된 주문들을 통해 헌법 제2조와 제24조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 제10조 1절에 의해 다른 국가의 민사관할권에 대해 국가 면제를 부여하는 국제관습법의 소용으로 우리 법규 체제에 생성된” 규범의 합헌성에 대한 질문은 근거가 없다고 선언한다.

이와 같이 2014. 10. 22. 이탈리아 헌법 재판소에서 결정되었다.

쥬세페 테사우로(헌법재판소장, 작성자)

가브리엘라 파올라 멜라티(기록원)

2014. 10. 22. 등기소에 저장됨

가브리엘라 파올라 멜라티(등기소장)

1. 영어 원문에 몇 조인지 누락됨. 다만 문맥상 10조로 보여짐. [↑](#footnote-ref-1)
2. 원문 자체가 미완성 문장이어서 문맥에 맞게 번역함. [↑](#footnote-ref-2)